

|   |                     |      |             |
|---|---------------------|------|-------------|
|  | <b>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b> | 규정번호 | 3-3-9       |
|   |                     | 제정일자 | 2011.10.01. |
|   |                     | 개정일자 | 2019.08.01. |
|   |                     | 개정차수 | 5차          |
|   |                     | 소관부서 | 교무입학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이하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한다.)의 자격과 임용 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함은 근무조건, 처우, 임용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고 산학협력 업무를 중점적으로 전담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하며, 임용의 형태에 따라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눈다.

제3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기독교인으로서 세례 받은 자. 다만, 비전임교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교원의 직명)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직명은 조교수로 한다.

제5조(임용절차) 신규교원의 임용절차는 [별표1]와 같다.

제6조(임용조건 및 재계약)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평가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비전임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종료 후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업 종료 시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계약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전임교원의 경우 재계약 대상자는 재임용대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별표7]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미제출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없이 당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2.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별표8]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3. 비전임교원의 경우 재계약 대상자는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 재계약심사표[별표9]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한다.

제7조(임용계약)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연봉금액
3. 기타 계약조건(연금, 건강보험적용, 각종 세액공제 등)

제8조(퇴직금) 전임교원은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처리하며, 비전임교원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무)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과 또는 행정부서에 소속 되며,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강의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내외에서 운영되는 각종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사운영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회의를 비롯한 제반 공식기구의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겸직금지)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은 경우나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보직에 임용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총장이 정하는 대학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년 7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 중 2012.7.22 현재 전임강사로 재직중인 자의 직명은 2012.7.22부로 조교수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